성남시 공고 제2026-6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동물보호법」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101조(과태료) 제4항 제4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4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: 「동물보호법」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6. 11. 26.~2026. 12. 17.(21일간)

3. 송달내용

회계 과목명	대상자	주 소	위반사항	처분 내용	반송사유
동물보호법 과태료	신*현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09번길 6-15, 2층	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) 제2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	「동물보호법」 제101조(과태료)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4(과태료 부과기준) 위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(과태료 20만원)	폐문부재

4. 근거법령

○ 동물보호법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제2항제1호
○ 동물보호법 제101조(과태료) 제4항제4호
○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

5. 유의사항

가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체납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.2%씩 중가산금(60개월까지)이 가산되며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(☎031-729-329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6일

성 남 시 장